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 강승규·강대식·정희용

김도읍 · 김장겸 · 이성권

박덕흠 • 박대출 • 권영진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 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			
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			
를 경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u>		
	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		
	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		
	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		
	<u>육하는 사람</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